

<사회보험법 개정내용>

2023.05.19.기준.

● 고용보험법

조문	기존	변경
	<p>제77조의4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1]]</p> <p>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p>	<p>제77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u>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u>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2022.6.10] [[시행일 2022.12.11]]</p> <p>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p> <p>[본조제목개정 2022.6.10] [[시행일 2022.12.11]]</p>
	<p>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u>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u>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2.12.11]]</p> <p>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1]]</p>	<p>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1]] [본조제목개정 2022.6.10] [[시행일 2022.12.11]]</p>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p>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7.1.]]</p> <p>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최종 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p> <p>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p>	<p>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u>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개정 2021.6.8, 2022.12.6] [[시행일 2023.1.1.]]</p> <p>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최종 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p> <p>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p>
--	---	--

	<p>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p>	<p>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p> <p>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p>
	<p>제104조의9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7.1]]</p> <p>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p> <p>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7.1]]</p> <p>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2.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p> <p>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p> <p>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p> <p>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p>	<p>제104조의9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1.6.8, 2022.12.6] [[시행일 2022.12.11]]</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p> <p>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p> <p>나.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p> <p>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8, 2022.12.6] [[시행일 2022.12.11]]</p> <p>1.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2.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p>

<p>부터 30일</p> <p>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p> <p>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p> <p>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li> <li>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li> <li>3. 물가상승률</li> <li>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7.1]]</p>	<p>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p> <p>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p> <p>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p> <p>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p> <p>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p> <p>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p> <p>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6] [[시행일 2022.1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li> <li>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li> <li>3. 물가상승률</li> <li>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6.8, 2022.12.6] [[시행일 2022.12.11]]</p>
<p>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p>	<p>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p>

<p>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p> <p>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p>	<p>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시행일 2023.1.1.]]</p> <p>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p>

	<p>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p> <p>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p>	<p>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p> <p>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p>
	<p>제104조의1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p> <p>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p> <p>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한다.</p> <p>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104조의9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p>	<p>제104조의16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6] [[시행일 2022.12.11]]</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p> <p><u>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u></p> <p><u>나.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u></p> <p>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한다. [개정 2022.12.6] [[시행일 2022.12.11]]</p> <p>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p>

	<p>3. 물가상승률</p> <p>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p>	<p>(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104조의9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6] [[시행일 2022.1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li> <li>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li> <li>3. 물가상승률</li> <li>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6] [[시행일 2022.12.11]]</p>
--	--	---

● 건강보험법

조문	기존	변경
신설		<p>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p> <p>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p> <p>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72조(보험료부과점수)</p> <p>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2조(보험료부과점수)</p> <p>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b>건강보험법 시행령</b>		
	<p>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p> <p>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p>	<p>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p> <p>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p>

<p>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p> <p>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p> <p>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u>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u>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p> <p>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u>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u>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p>	<p>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31] [[시행일 2022.9.1]]</p> <p>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p> <p>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p> <p>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u>1천분의 75 이상 1천분의 85 미만</u>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p> <p>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u>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u>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p>
<p>제41조 (소득월액)</p> <p>③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3.6, 2020.10.7] [[시행일 2020.11.1]]</p> <p>④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3.6, 2020.10.7] [[시행일 2020.11.1]]</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3.6, 2020.10.7] [[시행일 2020.11.1]]</p>	<p>제41조 (소득월액)</p> <p>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시행일 2022.9.1]]</p> <p>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p> <p>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p> <p>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3.6, 2020.10.7, 2022.8.31] [[시행일 2022.9.1]]</p> <p>⑤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3.6, 2020.10.7, 2022.8.31] [[시행일 2022.9.1]]</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1] [[시행일 2022.9.1]]</p>
		<p>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p> <p>① 직장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p>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p> <p>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p> <p>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0회</p>

		<p>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44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p> <p>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시행일 2022.1.1]]</p> <p>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시행일 2022.1.1]]</p>	<p>제44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p> <p>① <u>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u>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시행일 2023.1.1]]</p> <p>② <u>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u>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시행일 2023.1.1]]</p>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기존	변경
	<p>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p> <p>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p>	<p>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p> <p>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u>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u></p>
	<p>신설</p>	<p>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p> <p>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p>
	<p>신설</p>	<p>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p> <p>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p>
	<p>신설</p>	<p>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p> <p>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li> <li>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li> </ol>

● 보험료징수법 (23.01.01. 이후 시행)

조문	기존	변경
	<p>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p> <p>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p> <p>②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p> <p>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p> <p>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7] [[시행일 2011.1.1]]</p>	<p>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p> <p>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p> <p>②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p> <p>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p> <p>④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1.1]]</p> <p>⑤ 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8</p>

		<p>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1.1]]</p> <p>⑥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7, 2022.6.10] [[시행일 2023.1.1]]</p> <p>[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p>
	<p>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p> <p>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취소사유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전</p> <p>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li> <li>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li> <li>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ol> <p>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1.1]]</p> <p>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1.1]]</p>
	<p>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p> <p>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료의 정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p>	<p>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p> <p>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료의 정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p>

	<p>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4]</p> <p>② 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p>	<p>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4]</p> <p>② 공단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7.1]]</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7, 2022.6.10] [[시행일 2023.7.1]]</p>
	<p>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p> <p>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p> <p>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p>	<p>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p> <p>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p> <p>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1.1]]</p> <p>③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p>

<p>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p> <p>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p> <p>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1.1]]</p> <p>④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1.1]]</p> <p>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1.1]]</p> <p>⑥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1.1]]</p> <p>⑦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6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1.1]]</p> <p>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1.1]]</p> <p>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 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p>
--	---

		<p>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p> <p>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p> <p>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p> <p>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p>
	제48조의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p>제48조의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p> <p>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p>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1.1]]

시행령

제19조의3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보험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2022.6.28]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제19조의3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보험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2022.6.28, 2022.12.14] [[시행일 2023.1.1]]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p>2. 단기예술인</p> <p>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p> <p>4. 단기노무제공자</p> <p>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사목부터 차목까지 및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노무제공자</p> <p>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p> <p>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지급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이영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이 조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31]</p> <p>⑤ 제3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8, 2021.12.31]</p> <p>⑥ 삭제 [2021.12.31]</p> <p>⑦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p>	<p>2. 단기예술인</p> <p>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p> <p>4. 삭제 [2022.12.14] [[시행일 2023.1.1]]</p> <p>5. 삭제 [2022.12.14] [[시행일 2023.1.1]]</p> <p>6. 삭제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⑤ 삭제 [삭제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⑥ 삭제 [2021.12.31]</p> <p>⑦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7.1]]</p>
---	---

<p>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7.1]]</p>	
<p>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p> <p>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21.6.8] [[시행일 2021.7.1]]</p> <p>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p> <p>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p> <p>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p> <p>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p>	<p>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p> <p>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21.6.8, 2022.12.14] [[시행일 2023.1.1]]</p> <p>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u>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주의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u></p> <p>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p> <p>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말</p>

	<p>기준으로 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p>	<p>한다)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이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p>
	<p>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p> <p>①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18.12.31, 2020.12.8, 2021.6.8] [[시행일 2021.7.1]]</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나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개정 2017.6.27,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p>	<p>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p> <p>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18.12.31, 2020.12.8, 2021.6.8,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나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개정 2017.6.27,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 2022.12.14] [[시행일 2023.1.1]]</p> <p>1.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노무제공자에 대한 보</p>

	<p>1.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p>	<p>수총액 신고는 제외한다)</p> <p>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p> <p>①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14] [[시행일 2023.1.1]]</p> <p>1.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 3개월. 다만,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인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인가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p> <p>가.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1년</p> <p>나.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6개월</p> <p>2.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1년</p> <p>3.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p> <p>②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4] [[시행일 2023.1.1]]</p>
	<p>제56조의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p> <p>① 법 제48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p> <p>②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p>	<p>제56조의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p> <p>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월 보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p>

<p>「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0호, 같은 항 제11호가      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      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개정 2022.6.28]</p> <p>③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개      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시행일 2022.7.1]]</p> <p>④ 법 제48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의 상한액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      액으로 한다.</p> <p>⑤ 사업주는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노무제공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      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      제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무제공자의 고용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      다.</p>	<p>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이 영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      약 체결 신고와 이 조 제7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으로 한다. [신설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② 법 제4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③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0호, 같은 항 제11호가      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      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개정 2022.6.28,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④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해      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⑤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의 상한액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      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⑥ 사업주는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노무제공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      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      제한다. [개정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⑦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p>
---	---

		<p>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4] [[시행일 2023.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li> <li>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li> <li>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총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li> <li>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li> </ol> <p>[본조신설 2021.6.8 종전의 제56조의6은 제56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21.7.1]]</p>
	제56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p>제56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p> <p>③ 공단은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시행일 2023.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li> </ol>

		<p>2.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p> <p>3.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p> <p>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시행일 2023.1.1]]</p> <p>⑤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14] [[시행일 2023.1.1]]</p>
--	--	--